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2014나2040433]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한솔신텍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1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2가합75142 판결

【변론종결】2015. 7. 17.

【주문】

]

- 1.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피고 한솔신텍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4, 피고 6은 각 2014. 9. 26.까지, 피고 3, 피고 5, 삼 일회계법인은 각 2015. 9. 11.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가. 원고들과 피고 한솔신텍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4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나. 원고들과 피고 3, 삼일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다. 원고들과 피고 5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5가 각 부담한다.
- 라. 원고들과 피고 6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6이 각 부담한다.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및 구 자본시장법(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위 각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을 뿐, 두 청구가 상호간에 법률상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병합청구의 성질에 따르되, 그 판단 순서는 원고들이 붙인순위에 따른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피고 한솔신텍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4, 피고 3,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항소장에 기재된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금액이 제1심에서 기각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 부분만큼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 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의 항소취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①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② 같은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 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및 구 자본시장법(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 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위 각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을 뿐, 두 청구가 상호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병합청구의 성질에 따르되, 그 판단 순서는 원고들이 붙인 순위에 따른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피고 한솔신텍 주식회 사, 피고 2, 피고 4, 피고 3,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항소장에 기재된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 에 대한 항소금액이 제1심에서 기각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 부분만큼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 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의 항소취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①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 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② 같은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및 구 자본시장법(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위 각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을 뿐, 두 청구가 상호간에 법률상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병합청구의 성질에 따르되, 그 판단 순서는 원고들이 붙인 순위에 따른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피고 한솔신텍 주식회

사, 피고 2, 피고 4, 피고 3,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항소장에 기재된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금액이 제1심에서 기각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 부분만큼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의 항소취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①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금원을, ② 같은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 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및 구 자본시장법(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 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위 각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을 뿐, 두 청구가 상호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병합청구의 성질에 따르되, 그 판단 순서는 원고들이 붙인 순위에 따른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피고 한솔신텍 주식회 사, 피고 2, 피고 4, 피고 3,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항소장에 기재된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 에 대한 항소금액이 제1심에서 기각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 부분만큼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 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의 항소취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①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 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② 같은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및 구 자본시장법(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위 각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을 뿐, 두 청구가 상호간에 법률상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병합청구의 성질에 따르되, 그 판단 순서는 원고들이 붙인순위에 따른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피고 한솔신텍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4, 피고 3,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항소장에 기재된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금액이 제1심에서 기각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 부분만큼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의 항소취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①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② 같은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 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및 구 자본시장법(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 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위 각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을 뿐, 두 청구가 상호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병합청구의 성질에 따르되, 그 판단 순서는 원고들이 붙인 순위에 따른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피고 한솔신텍 주식회 사, 피고 2, 피고 4, 피고 3,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항소장에 기재된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 에 대한 항소금액이 제1심에서 기각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 부분만큼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 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의 항소취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①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 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② 같은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 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및 구 자본시장법(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외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위 각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을 뿐, 두 청구가 상호간에 법률상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병합청구의 성질에 따르되, 그 판단 순서는 원고들이 붙인순위에 따른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피고 한솔신텍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4, 피고 3,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항소장에 기재된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금액이 제1심에서 기각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 부분만큼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가. 원고들의 항소취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①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금원을, ② 같은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금원을 것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피고 주식회사 한솔신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텍,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 주권을 상장한주권상장법인이다.
- 2)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이하 위 피고들을 총칭할 경우 '피고 임원들'이라고 한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 순번피고근무기간지위1피고 22001. 2. 16.경 ~ 2012. 6. 28.대표이사2피고 32004. 2. 10. ~ 2012. 6. 28.이사/사내이사(기술 담당)3피고 42004. 2. 10. ~ 2012. 6. 28.이사/사내이사(재무 담당)4피고 52009. 3. 27. ~ 2012. 6. 28.사외이사5피고 62007. 3. 31. ~ 2012. 6. 28.감사
- 3) 피고 삼일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고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 외감법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인이다.
- 4)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자본시장법 제188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설정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인 별지2 '펀드 및 원고 목록'의 '투자신탁형 펀드'란 기재 각 해당 펀드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회사들이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고 유리멀티스트래티지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유리그로스앤인컴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유리그로스앤인컴증 권투자회사5호채권혼합은 자본시장법 제194조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들이다.
- 5) 원고들은 코스닥시장에서 별지3 주식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7. 14.부터 2012. 7. 23.까지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1) 피고 회사는 2007년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신규공사로 대체함과 아울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8기부터 제11기 반기까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
- 2) 피고 회사의 제8, 9, 10기 재무제표와 제11기 반기 재무제표 중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주요 항목의 내역은 다음 표(이하 '이 사건 금액대비표'라 한다)와 같다.
- 사업연도구분재무제표상의 금액(원)실제 금액(원)의자대 또는 과소계상된 금액(원)제8기자산총계74,688,620,66865,474,089,5029,214,531,166부채총계52,378,469,21158,962,242,011-6,583,772,800자본총계22,310,151,4576,511,847,49115,798,303,966매출액83,464,096,45069,175,013,41814,289,083,032당기순이익4,045,962,401-11,752,341,56515,798,303,966메출액83,464,096,45069,175,013,41814,289,083,032당기순이익4,045,962,401-11,752,341,56515,798,303,966제9기자산총계106,560,293,00787,949,134,75618,611,158,251부채총계60,649,634,11864,809,372,289-4,159,738,171자본총계45,910,658,88923,139,762,46722,770,896,422매출액133,202,090,496124,297,458,6238,904,631,873당기순이익8,583,330,4051,610,737,9496,972,592,456제10기자산총계138,995,840,112115,384,938,54723,610,901,565부채총계88,106,489,31197,159,561,070-9,053,071,759자본총계50,889,350,80118,225,377,47732,663,973,324매출액117,480,783,415101,351,589,14116,129,194,274당기순이익5,304,235,780-4,539,293,3159,843,529,095제11기반기자산총계199,221,451,913160,361,636,42438,859,815,489부채총계135,596,222,112136,144,139,933-547,917,821자본총계63,625,229,80124,217,496,49139,407,733,310매출액67,274,706,10759,276,280,6267,998,425,481당기순이익2,689,190,737-3,638,758,9856,327,949,722
- 3)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분식된 제8기 재무제표 등에 기초하여 2009. 4. 30. 그 발행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다음, 2009. 5. 15.부터 2011. 8. 16.까지 위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피고 회사가 제출한 위 사업보고서 등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되어 그 제출일 무렵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었다.
- 순번구분사업연도제출일1제9기 1분기보고서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2009. 5. 15.2제9기 반기보고서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2009. 8. 14.3제9기 3분기보고서2009. 1. 1.부터 2009. 9. 30.까지2009. 11. 16.4제9기 사업보고서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2010. 3. 31.5제10기 1분기보고서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2010. 5. 14.6제10기 반기보고서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2010. 8. 16.7제10기 3분기보고서2010. 1. 1.부터 2010. 9.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30.까지2010. 11. 15.8제10기 사업보고서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2011. 3. 31.9제11기 1분기보고서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2011. 5. 16.10제11기 반기보고서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2011. 8. 16.

- 4) 피고 회사가 제출한 위 사업보고서 등 중 분기보고서에는 당해 분기 재무제표 및 그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반기보고서에는 당해 반기 재무제표 및 그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사업보고서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각 포함되어 있다(가령 제9기 1분기보고서에는 제9기 1분기 재무제표와 제8기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에는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사업보고서에만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 5) 피고 6은 제9기 및 제10기 사업보고서에 첨부서류로 첨부된 감사의 감사보고서에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피고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고 또한 피고 회사의 재산상태와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타당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였다.

다.

피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 1) 피고 회계법인(소관: 부산지점)은 2006년부터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매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제 6기부터 제10기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 2) 위 기간 중 피고 회사의 매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피고 회계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다음 해 3월에 피고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결과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제8, 9, 10기 재무제표가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음에도, 피고 회계법인은 제8, 9, 10기 감사보고서에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자본 의 변동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 다"는 내용의 적정의견을 각 기재하였다.
- 4)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에 제8기 감사보고서는 2009. 3. 24., 제9기 감사보고서는 2010. 3. 12., 제10기 감사보고서는 2011. 3. 16. 각 제출하였다.
- 제8기 감사보고서는 피고 회사가 2009. 3. 30.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첨부서류로 첨부되어 2009년 4월경 증권신고서와 함께 공시되었고, 제9기 감사보고서는 피고 회사가 2010. 3. 31. 제출한 제9기 사업보고서에, 제10기 감사보고서는 피고 회사가 2011. 3. 31. 제출한 제10기 사업보고서에 각 첨부서류로 첨부되어 위 각 제출일 무렵 각 해당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되었다.
- 5)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감사보수는 제8기의 경우 45,000,000원, 제9기의 경우 67,000,000원, 제 10기의 경우 76,900,000원이었다.
 - 라.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피고 회사 인수 추진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는 2011년 3월경 피고 회사의 대주주들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 대주주들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피고 회사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 2) 삼성중공업의 피고 회사 인수 추진 사실이 2011. 7. 1. 언론에 보도되자, 한국거래소는 2011. 7. 4. 피고 회사에게 삼성중공업의 피고 회사 인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주주들이 삼성중공업과 그 보유지분의 일부 매각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는 내용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시하였다.
- 3) 삼성중공업과 피고 2(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였다), 피고 4, 피고 3 외 6인의 피고 회사 대주주들(이하 '피고 2 외 8인 '이라고 한다)은 2011. 7. 12. 삼성중공업이 피고 2 외 8인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2,612,338주(발행주식 총수의 27%)를 매매대금 41,536,174,200원(1주당 15,900원), 거래완결일 2011. 8. 25.(나중에 2011. 9. 22.로 변경되었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1. 7. 13. 삼성중공업과 피고 2 외 8인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하였다.
- 4)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피고 회사의 제10기 재무제표와 삼성중공업의 실사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삼성중공업은 피고 2 외 8인에게 매매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 2 외 8인은 최근 3사업 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정확성을 진술 및 보증하며, 피고 2 외 8인이 진술 및 보증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삼성중공업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분식회계 사실의 발견과 주권매매거래정지

- 1) 삼성중공업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안진회계법인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본실사 (2011. 8. 8.부터 2011. 8. 17.까지)를 진행하였는데, 이미 안진회계법인을 통한 예비실사(2011. 3. 30.부터 2011. 4. 20.까지) 단계에서 발견된 공사(프로젝트, 이하 '공사'라는 말만 사용하기로 한다)별 전산장부와 회계장부 사이의 원 재료 투입금액 차이로 인한 회계처리 오류금액의 정확한 규모가 본실사 단계에서도 자료 미흡으로 인하여 여전히 확인되지 않자, 2011. 8. 22.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거래완결 전에 정확한 회계처리 오류 금액을 산정하여 재무제표를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2) 이에 피고 회사는 2011. 9. 4. 피고 회계법인의 부산지점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삼성중공업이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니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다시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이러한 요청이 피고 회계법인 본점에 전달되자, 피고 회계법인 본점 소속 공인회계사 15명 가량이 2011. 9. 5. 피고 회계법인의 부산지점을 전격 방문하여 부산지점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의 지원하에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전수감사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상당한 규모의 회계오류가 있는 점을 발견하였다.
- 3) 이에 피고 회계법인은 2011. 9. 5. 자정 무렵 한국거래소에 "제10기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긴급히 하였으며, 한국거래소는 2011. 9. 6. 피고 회사에게 '분식회계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조회 공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같은 날 08:58:09경 피고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였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4) 이후 피고 회사는 2011. 9. 7. "전기 및 당반기의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수익인식방법 중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현재 수익 인식방법에 있어 추가 오류 여부 및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

외부감사인의 재감사가 진행 중이니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도록 하겠다.

"는 내용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시하였다.

- 5) 피고 회계법인은 2011. 9. 15.부터 본격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재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1. 10. 16. 피고 회사는 피고 회계법인에 "피고 회사가 2008년부터 2011년 반기까지 프로젝트의 예정원가 대비 실제 발생원가 귀속을 적정하게 하지 못하여 매출액과 순이익이 과대계상되는 회계오류가 발생하였는데,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피고 회계법인에 적절하게 고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6) 피고 회계법인의 위 재감사 결과가 2011. 10. 26. 나오자, 피고 회사는 위 재감사 결과에 기초하여 같은 날 "피고 회계법인의 재감사 결과에 따라 제9, 10기 및 제11기 반기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요약 재무현황을 이 사건 금액대비표와 같이 정정한다"는 취지의 공시를 우선 한 다음, 2011. 11. 24. 수정된 제9, 10기 재무제표 및 제11기 반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수정된 제10기 사업보고서 및 제11기 반기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바. 삼성중공업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합의해제 등

- 1) 삼성중공업은 피고 회사 인수 계획을 포기하고 2011. 12. 5. 피고 2 외 8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 2) 한국거래소는 2011. 12. 7.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상장신청서 허위기재'가 피고 회사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의신청하였다.
- 3) 이에 한국거래소는 2012. 3. 8. 피고 회사에 대하여 3개월의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하였다. 사.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 재개
- 1) 삼성중공업의 피고 회사 인수가 무산된 이후, 피고 회사의 대주주들은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이하 '한솔이엠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한솔이엠이의 피고 회사 인수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였다.
- 2) 피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약 68%에 해당하는 주식(주식 합계 6,579,979주)을 보유한 주주 750명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일정기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되고 그 기간 내에 타사와 M&A가 성사된 이후 상장이 유지되어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된다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 3) 한솔이엠이는 2012. 3. 5. 피고 2, 피고 4, 피고 3 외 3인의 피고 회사 대주주들(이하 '피고 2 외 5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3,306,385주(발행주식 총수의 34.17%)를 매매대금 33,063,85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 외 5인은 거래완결일인 2012. 6. 28. 한솔이엠이로부터 받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은 매매대금 중 세금과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28,087,504,442원을 무상으로 피고 회사에 출연하였다.
- 4) 한국거래소는 2012. 7. 10. 피고 회사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2. 7. 11. 피고 회사에 대한 주 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었다.
 - 아.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
- 1)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고 한다)는 2011. 12. 16. 한국거래소로부터 피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고,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피고 회계법인의 제8, 9, 10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하게 한 다음 그 조사·감리 결과에 터잡아 2012. 6. 27.경 피고 회사, 피고 회계법인, 피고 회계법인의 담당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 및 이에 근거한 제재조치(피고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500,000,000원부과, 감사인지정 3년 등,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감사보수의 70%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적립, 피고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 피고 회계법인의 담당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하여: 피고 회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 이하 '이 사건 제재조치'라 한다.
- [피고 회사에 대한 지적사항]① 매출액 과대계상 등(2008. 12.말: 16,842백만 원, 2009. 12.말: 26,388백만 원, 2010. 12.말: 39,592백만 원)-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전산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을 과소계상②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2009. 4. 15.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모집총액 17,500백만 원)에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사용[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사항]매출액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08. 12.말: 16,842백만 원, 2009. 12.말: 26,388백만 원, 2010. 12.말: 39,592백만 원)- 공사현장별 원가 배부내역을 관련 증빙과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고 회사가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2) 증선위로부터 이 사건 제재조치를 받은 피고 회계법인 및 피고 회계법인의 담당 공인회계사 3명은 이 사건 제재조치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 자. 피고 2, 피고 4 및 피고 회사 등에 대한 형사판결
- 1) 피고 2, 피고 4 및 피고 회사와 소외 1, 소외 2는 창원지방법원 2012고합558, 567, 581, 2013고합35(각 병합) 주식회 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으로 공소제기되었다.
- 2) 위 법원은 2013. 5. 30. "① 피고 2, 피고 4와 소외 1(피고 회사 경영지원본부 재경팀 차장), 소외 2(피고 회사 경영지원본부 재경팀 팀장, 다만, 소외 2는 제8기 재무제표 작성 부분에 한함)는 공모하여 피고 회사의 제8기부터 제10기까지의 3개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자본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또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각 공시하였고, ② 피고 2, 피고 4와 소외 1, 소외 2는 공모하여 공모증자를 추진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제8기 재무상황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 이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 그 무렵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75억 원을 청약대금으로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피고 회사는 그 대표자 또는 종업원인 피고 2, 피고 4와 소외 1, 소외 2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③ 소외 1은 삼성중공업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담당자와의 회의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 발견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고,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인 2011. 8. 24. 자신 명의 및 차명계좌인 조카 소외 11 명의의 각 현대증권 계좌를 통하여 피고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합계 159,730,564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2를 징역 3년에, 피고 4를 징역 2년 6월에, 소외 1을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에, 소외 2를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에, 피고 회사를 벌금 45억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검사와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4 및 소외 1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노22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위 항소인들이 다시 대법원 2013도1500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5. 16.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위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변동추이

2011. 5. 2.부터 2012. 9. 28.까지의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변동추이는 별지4 주가변동내역표 기재와 같고, 2010. 5. 3.부터 2012. 8. 3.까지의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변동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피고 주식회사 한솔신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텍,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 주권을 상장한주권상장법인이다.
- 2)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이하 위 피고들을 총칭할 경우 '피고 임원들'이라고 한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 순번피고근무기간지위1피고 22001. 2. 16.경 ~ 2012. 6. 28.대표이사2피고 32004. 2. 10. ~ 2012. 6. 28.이사/사내이사(기술 담당)3피고 42004. 2. 10. ~ 2012. 6. 28.이사/사내이사(재무 담당)4피고 52009. 3. 27. ~ 2012. 6. 28.사외이사5피고 62007. 3. 31. ~ 2012. 6. 28.감사
- 3) 피고 삼일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고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 외감법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인이다.
- 4)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자본시장법 제188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설정한 신탁형 집합투자 기구인 별지2 '펀드 및 원고 목록'의 '투자신탁형 펀드'란 기재 각 해당 펀드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회사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이다.

- 원고 유리멀티스트래티지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유리그로스앤인컴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유리그로스앤인컴증 권투자회사5호채권혼합은 자본시장법 제194조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들이다.
- 5) 원고들은 코스닥시장에서 별지3 주식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7. 14.부터 2012. 7. 23.까지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1) 피고 회사는 2007년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신규공사로 대체함과 아울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8기부터 제11기 반기까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
- 2) 피고 회사의 제8, 9, 10기 재무제표와 제11기 반기 재무제표 중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주요 항목의 내역은 다음 표(이하 '이 사건 금액대비표'라 한다)와 같다.
- 사업연도구분재무제표상의 금액(원)실제 금액(원)의자대 또는 과소계상된 금액(원)제8기자산총계74,688,620,66865,474,089,5029,214,531,166부채총계52,378,469,21158,962,242,011-6,583,772,800자본총계22,310,151,4576,511,847,49115,798,303,966매출액83,464,096,45069,175,013,41814,289,083,032당기순이익4,045,962,401-11,752,341,56515,798,303,966제9기자산총계106,560,293,00787,949,134,75618,611,158,251부채총계60,649,634,11864,809,372,289-4,159,738,171자본총계45,910,658,88923,139,762,46722,770,896,422매출액133,202,090,496124,297,458,6238,904,631,873당기순이익8,583,330,4051,610,737,9496,972,592,456제10기자산총계138,995,840,112115,384,938,54723,610,901,565부채총계88,106,489,31197,159,561,070-9,053,071,759자본총계50,889,350,80118,225,377,47732,663,973,324매출액117,480,783,415101,351,589,14116,129,194,274당기순이익5,304,235,780-4,539,293,3159,843,529,095제11기반기자산총계199,221,451,913160,361,636,42438,859,815,489부채총계135,596,222,112136,144,139,933-547,917,821자본총계63,625,229,80124,217,496,49139,407,733,310매출액67,274,706,10759,276,280,6267,998,425,481당기순이익2,689,190,737-3,638,758,9856,327,949,722
- 3)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분식된 제8기 재무제표 등에 기초하여 2009. 4. 30. 그 발행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다음, 2009. 5. 15.부터 2011. 8. 16.까지 위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피고 회사가 제출한 위 사업보고서 등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되어 그 제출일 무렵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었다.
- 순번구분사업연도제출일1제9기 1분기보고서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2009. 5. 15.2제9기 반기보고서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2009. 8. 14.3제9기 3분기보고서2009. 1. 1.부터 2009. 9. 30.까지2009. 11. 16.4제9기 사업보고서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2010. 3. 31.5제10기 1분기보고서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2010. 5.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14.6제10기 반기보고서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2010. 8. 16.7제10기 3분기보고서2010. 1. 1.부터 2010. 9. 30.까지2010. 11. 15.8제10기 사업보고서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2011. 3. 31.9제11기 1분기보고서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2011. 5. 16.10제11기 반기보고서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2011. 8. 16.

- 4) 피고 회사가 제출한 위 사업보고서 등 중 분기보고서에는 당해 분기 재무제표 및 그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반기보고서에는 당해 반기 재무제표 및 그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사업보고서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각 포함되어 있다(가령 제9기 1분기보고서에는 제9기 1분기 재무제표와 제8기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에는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사업보고서에만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 5) 피고 6은 제9기 및 제10기 사업보고서에 첨부서류로 첨부된 감사의 감사보고서에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피고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고 또한 피고 회사의 재산상태와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타당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였다.

다.

피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 1) 피고 회계법인(소관: 부산지점)은 2006년부터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매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제 6기부터 제10기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 2) 위 기간 중 피고 회사의 매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피고 회계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다음 해 3월에 피고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결과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제8, 9, 10기 재무제표가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음에도, 피고 회계법인은 제8, 9, 10기 감사보고서에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자본의 변동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적정의견을 각 기재하였다.
- 4)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에 제8기 감사보고서는 2009. 3. 24., 제9기 감사보고서는 2010. 3. 12., 제10기 감사보고서는 2011. 3. 16. 각 제출하였다.
- 제8기 감사보고서는 피고 회사가 2009. 3. 30.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첨부서류로 첨부되어 2009년 4월경 증권신고서와 함께 공시되었고, 제9기 감사보고서는 피고 회사가 2010. 3. 31. 제출한 제9기 사업보고서에, 제10기 감사보고서는 피고 회사가 2011. 3. 31. 제출한 제10기 사업보고서에 각 첨부서류로 첨부되어 위 각 제출일 무렵 각 해당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되었다.
- 5)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감사보수는 제8기의 경우 45,000,000원, 제9기의 경우 67,000,000원, 제 10기의 경우 76,900,000원이었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라.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피고 회사 인수 추진

- 1)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는 2011년 3월경 피고 회사의 대주주들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 대주주들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피고 회사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 2) 삼성중공업의 피고 회사 인수 추진 사실이 2011. 7. 1. 언론에 보도되자, 한국거래소는 2011. 7. 4. 피고 회사에게 삼성중공업의 피고 회사 인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주주들이 삼성중공업과 그 보유지분의 일부 매각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는 내용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시하였다.
- 3) 삼성중공업과 피고 2(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였다), 피고 4, 피고 3 외 6인의 피고 회사 대주주들(이하 '피고 2 외 8인 '이라고 한다)은 2011. 7. 12. 삼성중공업이 피고 2 외 8인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2,612,338주(발행주식 총수의 27%)를 매매대금 41,536,174,200원(1주당 15,900원), 거래완결일 2011. 8. 25.(나중에 2011. 9. 22.로 변경되었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1. 7. 13. 삼성중공업과 피고 2 외 8인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하였다.
- 4)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피고 회사의 제10기 재무제표와 삼성중공업의 실사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삼성중공업은 피고 2 외 8인에게 매매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 2 외 8인은 최근 3사업 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정확성을 진술 및 보증하며, 피고 2 외 8인이 진술 및 보증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삼성중공업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분식회계 사실의 발견과 주권매매거래정지

- 1) 삼성중공업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안진회계법인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본실사 (2011. 8. 8.부터 2011. 8. 17.까지)를 진행하였는데, 이미 안진회계법인을 통한 예비실사(2011. 3. 30.부터 2011. 4. 20.까지) 단계에서 발견된 공사(프로젝트, 이하 '공사'라는 말만 사용하기로 한다)별 전산장부와 회계장부 사이의 원 재료 투입금액 차이로 인한 회계처리 오류금액의 정확한 규모가 본실사 단계에서도 자료 미흡으로 인하여 여전히 확인되지 않자, 2011. 8. 22.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거래완결 전에 정확한 회계처리 오류 금액을 산정하여 재무제표를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2) 이에 피고 회사는 2011. 9. 4. 피고 회계법인의 부산지점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삼성중공업이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니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다시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이러한 요청이 피고 회계법인 본점에 전달되자, 피고 회계법인 본점 소속 공인회계사 15명 가량이 2011. 9. 5. 피고 회계법인의 부산지점을 전격 방문하여 부산지점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의 지원하에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전수감사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상당한 규모의 회계오류가 있는 점을 발견하였다.
- 3) 이에 피고 회계법인은 2011. 9. 5. 자정 무렵 한국거래소에 "제10기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긴급히 하였으며, 한국거래소는 2011. 9. 6. 피고 회사에게 '분식회계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조회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같은 날 08:58:09경 피고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였다.

4) 이후 피고 회사는 2011. 9. 7. "전기 및 당반기의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수익인식방법 중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현재 수익 인식방법에 있어 추가 오류 여부 및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

외부감사인의 재감사가 진행 중이니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도록 하겠다.

"는 내용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시하였다.

- 5) 피고 회계법인은 2011. 9. 15.부터 본격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재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1. 10. 16. 피고 회사는 피고 회계법인에 "피고 회사가 2008년부터 2011년 반기까지 프로젝트의 예정원가 대비 실제 발생원가 귀속을 적정하게 하지 못하여 매출액과 순이익이 과대계상되는 회계오류가 발생하였는데,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피고 회계법인에 적절하게 고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6) 피고 회계법인의 위 재감사 결과가 2011. 10. 26. 나오자, 피고 회사는 위 재감사 결과에 기초하여 같은 날 "피고 회계법인의 재감사 결과에 따라 제9, 10기 및 제11기 반기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요약 재무현황을 이 사건 금액대비표와 같이 정정한다"는 취지의 공시를 우선 한 다음, 2011. 11. 24. 수정된 제9, 10기 재무제표 및 제11기 반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수정된 제10기 사업보고서 및 제11기 반기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바. 삼성중공업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합의해제 등

- 1) 삼성중공업은 피고 회사 인수 계획을 포기하고 2011. 12. 5. 피고 2 외 8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 2) 한국거래소는 2011. 12. 7.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상장신청서 허위기재'가 피고 회사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의신청하였다.
- 3) 이에 한국거래소는 2012. 3. 8. 피고 회사에 대하여 3개월의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하였다.
- 사.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 재개
- 1) 삼성중공업의 피고 회사 인수가 무산된 이후, 피고 회사의 대주주들은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이하 '한솔이엠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한솔이엠이의 피고 회사 인수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였다.
- 2) 피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약 68%에 해당하는 주식(주식 합계 6,579,979주)을 보유한 주주 750명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일정기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되고 그 기간 내에 타사와 M&A가 성사된 이후 상장이 유지되어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된다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 3) 한솔이엠이는 2012. 3. 5. 피고 2, 피고 4, 피고 3 외 3인의 피고 회사 대주주들(이하 '피고 2 외 5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3,306,385주(발행주식 총수의 34,17%)를 매매대금 33,063,85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수하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 외 5인은 거래완결일인 2012. 6. 28. 한솔이엠이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세금과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28,087,504,442원을 무상으로 피고 회사에 출연하였다.
- 4) 한국거래소는 2012. 7. 10. 피고 회사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2. 7. 11. 피고 회사에 대한 주 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었다.
 - 아.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
- 1)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고 한다)는 2011. 12. 16. 한국거래소로부터 피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고,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피고 회계법인의 제8, 9, 10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하게 한 다음 그 조사·감리 결과에 터잡아 2012. 6. 27.경 피고 회사, 피고 회계법인, 피고 회계법인의 담당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 및 이에 근거한 제재조치(피고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500,000,000원부과, 감사인지정 3년 등,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감사보수의 70%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추가적립, 피고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 피고 회계법인의 담당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하여: 피고 회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 이하 '이 사건 제재조치'라 한다.
- [피고 회사에 대한 지적사항]① 매출액 과대계상 등(2008. 12.말: 16,842백만 원, 2009. 12.말: 26,388백만 원, 2010. 12.말: 39,592백만 원)-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전산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을 과소계상②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코스탁시장 상장을 위하여 2009. 4. 15.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모집총액 17,500백만 원)에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사용[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사항]매출액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08. 12.말: 16,842백만 원, 2009. 12.말: 26,388백만 원, 2010. 12.말: 39,592백만 원)- 공사현장별 원가 배부내역을 관련 증빙과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고 회사가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2) 증선위로부터 이 사건 제재조치를 받은 피고 회계법인 및 피고 회계법인의 담당 공인회계사 3명은 이 사건 제재조치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 자. 피고 2, 피고 4 및 피고 회사 등에 대한 형사판결
- 1) 피고 2, 피고 4 및 피고 회사와 소외 1, 소외 2는 창원지방법원 2012고합558, 567, 581, 2013고합35(각 병합) 주식회 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으로 공소제기되었다.
- 2) 위 법원은 2013. 5. 30. "① 피고 2, 피고 4와 소외 1(피고 회사 경영지원본부 재경팀 차장), 소외 2(피고 회사 경영지원본부 재경팀 팀장, 다만, 소외 2는 제8기 재무제표 작성 부분에 한함)는 공모하여 피고 회사의 제8기부터 제10기까지의 3개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자본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또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각 공시하였고, ② 피고 2, 피고 4와 소외 1, 소외 2는 공모하여 공모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증자를 추진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제8기 재무상황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 그 무렵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75억 원을 청약대금으로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피고 회사는 그 대표자 또는 종업원인 피고 2, 피고 4와 소외 1, 소외 2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③ 소외 1은 삼성중공업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담당자와의 회의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 발견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고,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인 2011. 8. 24. 자신 명의 및 차명계좌인 조카 소외 11 명의의 각 현대증권 계좌를 통하여 피고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합계 159,730,564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2를 징역 3년에, 피고 4를 징역 2년 6월에, 소외 1을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에, 소외 2를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에, 피고 회사를 벌금 45억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3) 이에 검사와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4 및 소외 1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노22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위 항소인들이 다시 대법원 2013도1500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5. 16.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위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차.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변동추이
- 2011. 5. 2.부터 2012. 9. 28.까지의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변동추이는 별지4 주가변동내역표 기재와 같고, 2010. 5. 3.부터 2012. 8. 3.까지의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변동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